

第10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3月 20日(火) 11時02分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 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 新聞·福券販賣臺, 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9.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10. 都市計劃事業(道路)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11.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 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 新聞·福券販賣臺, 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8.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9.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2面
10. 都市計劃事業(道路)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2面
11.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7面

(11時02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각 안건별로 심의를 한 후에
安載弘議員의 수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9.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0. 都市計劃事業(道路)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1時05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9항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

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의사일정 제10항 都市計劃事業(道路)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東奎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을 비롯한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칩이 지나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춘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하시는 사업이 만사형통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시와 자치구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또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오던 가스시설 시공업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에 통폐합되었는 바 전문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가스시설 시공업업무를 이관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제7조제2항제8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신설하였으며, 생활복지국 분장사무 중 제6조제2항제17호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 및 가스시공업 등록업무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처리 부서의 통일 및 관련법 적용의 일관성 등의 유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

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공개의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주민 공개를 제한하는 4가지 사항 중 제2호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과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동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 제1호의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하고, 제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목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민 공개의 제한사유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투명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삭제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용자금 대부신청 시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는 1명,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상환기한 전 용자금 반환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용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은 미수금 발생 시 원만한 채

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나 이를 삭제토록 한 것은 용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 기금 결손발생 시 구의 재정손실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결손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한 본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를 개정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부칙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제1항을 개정한 후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 시 구비서류 중 제3호의 장애인 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고, 조례 제6조에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발전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다만, 계약자가 조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삭제하고, 제5조에서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 변기나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에서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토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다만,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 아니라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체관리 방안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 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업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수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제1항에서 정화조 청소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를 “정화시설이 규칙 제53조 및 제94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화조 청소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내용인 규칙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정화조 설치기준의 부적합 여부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식별하기 어려

운 기술적인 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비현실성 규정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 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또한, 규제사무로 분류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은 “배출 3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배출 3일 전”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5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봉투판매소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봉투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다만,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신설되어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운반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방식대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도 있는 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内の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金福同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金福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金以煥 議長님! 그리고 金正大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공사 다망한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의 변경은 없이 조례문구 중 행정편의 위주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한 자구를 축소하여 열거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단서 중에서 구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되,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안은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는 규정 중에서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구를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자구 수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불합리한 경관지구 지정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고 있어서 선거 때마다 이의 조정에 대한 공약추진 등이 있어왔으나 실제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 우리 의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해제 추진 노력과 도시계획 관계관들의 협력으로 우선 일부지역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여 일부 지역의 경관지구 해제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개 분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건축규제완화 사항입니다.

먼저, 자연경관지구 해제 대상지역은 팔판동 115번지 1호 일대 11만 490.6㎡, 삼청동 20번지 일대 4,046.5㎡, 삼청동 27번지 3호 일대 6,159㎡, 혜화동 5번지 50호 일대 5,930.1㎡로 총 4개 지역에 면적은 2만 7,626.2㎡입니다. 다음은 건축규제완화지역은 평창동 154번지 1호, 일대 외 2개 지역 1만 8,337㎡, 신영동 5번지 1호 일대 외 3개 지역 1만 7,461㎡, 홍지동 93번지 2호 일대 외 4개 지역 3만 2,590.1㎡ 등 총 12개 지역에 6만 8,388.1㎡의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자연경관지구 현황을 조사하였고, 2001년 1월 경관지구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 방침 결정을 한 후 2001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며 지역여건상 경관지구로서의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경관지구 해제 및 건

축규제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 사
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사업(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 중
승인동 408번지에서 362번지 2호간을 도시계획시
설(도로) 10m에서 8m로 선형 변경코자 검토하였
으나 2000년 제7차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선형변
경(안) 심의결과 선형변경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지
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 연계하여 재검토하도록
보류 결정에 따라 기이 책정된 사업예산 4억원을
우선 승인동 411번지에서 324번지 구간 폭 6m 길
이 110m의 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10m 도로
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8m 이상 약 100m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서 현 상태로 주민 및 차량통행
에 커다란 지장이 없으며 예산을 전용하여 개설하
고자 하는 구간인 승인동 411번지에서 324번지
구간은 신설동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이 성북
보문동을 우회함으로써 시간적·물질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는 지역입니다. 심사 결과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
선사업지구와의 인접지역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소
방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향후에는 8m 도로로 확장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 주민
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의 편에 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
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都市計劃事業(道路) 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
(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金以煥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
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
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
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
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
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
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
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 新聞·福券販賣臺,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 契約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都市計劃事業(道路)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

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11時38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安載弘議員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安載弘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 20일경까지 동기능전환 관련 시설공사가 13개 동 동사무소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는 바 왜 좋은 계절을 피하여 월동기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시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기능전환의 기본방향 중 하나는 동사무소 공간을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공간을 주민문화복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동사무소 사무인력의 조정과 전체 19개 동 중 신축 시범 실시동을 제외한 13개 동의 시설공사가 동절기에 추진된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지침이 작년도 3월 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동지침에 의거해서 동기능 전환업무를 본격 추진하여 동청사 시설공사를 위한 물량 현장조사를 6월 달에 실시를 하고 설계용역을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개월간의 입찰과정을 거쳐 공사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작년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시설공사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월동기에 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조보강을 위

해서 습식공법이 적용된 일부 등에 대하여는 각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계절적 요인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 업무는 범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코자 지침에 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 2월에 시설 개보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동청사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以煥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安載弘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장사법등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용도구역에 관계 없이 주거지역에 납골당 설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였는 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安載弘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납골당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법령이 비록 좁은 국토에서 묘지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주거밀집지역에 납골당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곤란한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역 내의 납골당 설치를 자제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들과 협의하여 서울시와 주관 중앙행정기관에 주거밀집지역에서의 납골시설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종로구의회 본회의에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어 뜻깊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安載弘 議員님께서 질문해주신 평창동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 도시계획 해제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동 148번지 일대 7,746㎡의 대지가 지난 '77년부터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토지주들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부터 토지주들이 수차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저희 종로구에서는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의 토지주들의 주장은 차고지로 이용하던 유성운수에서 마포구로 차고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관련부서나 저희 구의 의견은 마포구로 이전한 유성운수의 차고지는 임시 차고지이기 때문에 대체 차고지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차고지의 필요성 여부는 어느 버스회사 하나의 차고지의 필요성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버스 교통정책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 하는 사유로 반려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토지주들이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토지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국민고충처

리위원회의 권고안도 받아들이고 또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토지주들의 민원도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해제를, 그러나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제와 관련된 최근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자로 또다시 토지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토지주들의 주장은 유성운수가 은평권역에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했으니까 지금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의 관련 부서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버스회사의 의견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대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제 여부를 추진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토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도원교통으로부터 의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도원교통에서는 해당 토지가 총면적이 7,746㎡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차고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 664㎡만 차고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원교통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이 임대를 해주거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해당 토지주들은 임대나 매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반대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원교통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는 대체 차고지 확보 여부에 대한 관련서류,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 달 중으로 대체 차고지 확보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칠 것입니다. 마치고 4월 중으로 공람공고를 거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그리고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安載弘 議員! 관계국장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安載弘 議員 議席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安載弘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 議員 安載弘 議員입니다. 세 분의 局長님들께서 본 의원의 질문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나 생활복지국 소속의 남골당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또 해당 국·과장님들 인근에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남골시설로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볼 때 실제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도로건축법에 의해서 접도구역, 농진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남골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이 평창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시설 안에서 남골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의 남골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인동의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경관이 비교적 좋은 평창동 지역의 종교시설 내에 납골시설을 하겠다면 주차장도 필요가 없이 기존의 사찰 경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즉 미래적으로 발생하겠죠. 지금 당장 야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축소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제가 볼 때 법령에 의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이니까 시행령의 개정만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 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安載弘議員! 이의 없으십니까?

(○安載弘議員 議席에서 - 이의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安載弘議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閉會)

○出席議員數 19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崔康洵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